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종갑 의원)

의안 번호	22-128
----------	--------

발의년월일 : 2022. 11. .  
발의자 : 강동오, 권영숙, 김승수,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상원, 이한동, 장정희,  
최은하, 홍지광

1. 제정이유

마포구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안 제4조)
-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2. 11. 18. ~ 11. 2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제휴·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업무제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몰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여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중단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일몰 사유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현황, 추진내역,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
- 안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4. 작성자 : 새마포담당관 정우열(02-3153-8509)